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칙 제01호]

[2017.10.21. 제정, 2021.10.08. 개정, 2022.10.14. 제정 및 개정, 2023.10.19. 개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 따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시행원칙)

- ① 본회 모든 회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선거를 보통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편타당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선거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 한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의 시기)

- ① 본회 선거는 통상적으로 2학기 말에 시행한다.
- ② 그 밖의 기구의 선거 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5조(선거준비기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연서의 마감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선거공고
2. 연서기간

제6조(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입후보 등록 및 공고

2. 유세기간

3. 투표기간

4. 당선공고

5. 이의제기 기간

6. 당선확정 공고

7.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②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운영위원회는(이하 “의운위” 라 한다)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의 7일 전까지 상세한 선거기간을 결정한다.

제7조(선거운동본부 ·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선본에 속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하 “선본원”이라 한다)은 선거운동을 할 때에 이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책이나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언론단체의 공정보도의무)

본회의 언론단체는 선본 및 후보자의 의견, 토론회 등을 보도·논평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세칙 밖의 판단)

① 이 세칙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의 판단은 의운위에서 결정한다.

② 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의선관위” 라 한다)는 제1항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0조(선거권)

투표일 현재 본회 회원 중 재학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다.

제11조(피선거권)

후보 등록일 현재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사람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제3장 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의선관위는 선거를 본회 회칙과 이 세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운위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임시특별기구이다.

제13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

의운위는 의과대학운영위원(이하 “의운위원”이라 한다) 중 4인 이상을 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이하 “의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고, 재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14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의선관위는 의운위에서 의운위원 중 선임한 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의선관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의선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의운위는 부득이한 경우 의선관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선관위는 24시간 이내에 의선관위 구성과 구성의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의운위원만으로 의선관위의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기타사유로 추가로 선임해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운위는 대상을 추가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 ④ 의선관위원은 의선관위 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할 수 없다.

제15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의선관위원의 임기는 구성 이후부터 해당 선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6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

- ① 의운위는 의선관위원 중 1인을 의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② 의선관위원장은 회의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의선관위원장이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각 호의 절차를 따라 의선관위원장 직을 승계한다.
 1. 의선관위는 의선관위원장 결위 시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자동으로 소집하고, 1인을 주재자로 선임한다.
 2. 의선관위는 의선관위원 중 1인을 의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의운위에 상정한다.
 3. 의운위는 선임된 의선관위원장을 재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17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와 역할)

- ① 의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한다.
- ② 의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의선관위는 본회 회원에게 각종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④ 의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고 부착·배부하여야 한다.

- ⑤ 의선관위는 제85조제5항에 따라 “경고”를 조치한 선본의 선거 포스터에 경고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⑥ 의선관위는 선거의 홍보와 안내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⑦ 의선관위는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⑧ 의선관위는 특정 선본·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의 문화를 해치는 각종 선전물을 삭제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⑨ 의선관위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1. 선본·후보자의 자격박탈
 - 2. 재선거
 - 3. 선거일정의 조정
 - 4. 당선무효
 - 5.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제18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피선거권)

의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19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의무)

- ① 의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의선관위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① 의선관위 회의에서는 선거의 진행과 후보자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그밖에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의선관위 회의에서는 이 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항의 수치·수량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의선관위 회의는 의선관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④ 의선관위 회의의 의결은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불가피하게 표결하여야 할 경우 참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의선관위는 의선관위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의선관위원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 ① 의선관위는 의운위의 심의를 거쳐 의선관위 집행부를 둘 수 있다.
- ② 집행부는 본회 회원 중 재학 중인 사람으로 구성된다.
- ③ 집행부는 의선관위를 도와 선거 및 투표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 ④ 집행부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 ⑤ 집행부는 제17조제7항에 해당하는 의선관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1.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에 접촉하는 행위
 2. 투표용지에 의선관위 직인을 찍는 행위
 3.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행위
- ⑥ 의선관위 집행부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본에 소속될 수 없다.
- ⑦ 의선관위 집행부는 선거 종료 시 해산한다.

제22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의선관위는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한 개 이상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23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박탈)

- ① 본회의 회원은 의선관위원이 제17조 혹은 제19조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의운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이 발생하고 의운위의 재적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의운위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운위의 의장이 의선관위원일 경우 자동으로 소집을 하며 의선관위원이 아닌 의운위원 중 한 사람을 임시 의장으로 호선하여야 한다.
- ③ 의운위는 사안의 경증과 의도성을 파악하여 해당 의선관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운위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선관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24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구성)

- ① 의선관위원의 과반이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의운위는 의선관위를 해체하고 24시간 이내에 재구성하여야 한다.
- ② 의운위는 해체한 의선관위에 속하였던 사람을 의선관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의운위는 의선관위를 재구성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제25조(선거공고)

의선관위는 선거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운동본부 명칭)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의 명칭(이하 “선본명”이라 한다)을 입후보 등록 시 의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본명의 제한 여부는 의운위에서 결정한다.

제27조(선거운동본부 색상)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의 색상(이하 “선본색”이라 한다)을 입후보 등록 시 의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본색의 제한 여부는 의운위에서 결정한다.

제28조(입후보 등록)

- ①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선본·후보자는 의선관위가 공고한 등록의 마감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의선관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7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약이 8호에 포함될 수 없다.
1. hwp 또는 그 외 의선관위가 정한 입후보 등록원서 파일과 인쇄물
 2. 본회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인 서명서
 3. 정·부후보 소견서 각 1매(A4용지 1장)
 4. 정·부후보 흑백 사진 파일
 5. 정·부후보 재학증명서 각 1매
 6. 성명·학번을 포함한 선본원 명부 및 선본장 정보
 7. hwp 또는 그 외 의선관위가 정한 형식의 선거 공약 및 유통구호 파일
 8. hwp 또는 그 외 의선관위가 정한 형식의 의선관위 포스터용 정책파일
 9. pdf 형식의 국문본 정책자료집(188*257mm)
 10. 선본색 (RGB 코드)
- ③ 출마형태는 “정후보 1인”의 형태 또는 “정후보 1인과 부후보 1인”의 형태로 한정한다.
- ④ 의선관위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의선관위는 입후보하려는 선본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선관위에서 정한 공고일 18시까지 등록한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선본명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2. 선본이 등록일 18시 이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의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조치하고 등록을 접수할 수 있다.
 3. 등록일 18시 30분 00초 이후에는 등록을 금한다.
 4. 의선관위의 과실로 미비한 서류를 접수했을 경우, 의선관위는 선본에 당일 21시까지 이를 통보하고 다음날 18시까지 보완된 서류를 접수한다.

제29조(등록무효)

- ① 입후보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선본·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② 선본·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의선관위는 즉시 그 선본·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후보등록기간의 연장)

만일 공고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된 후보가 없거나 모든 등록 선본이 등록무효처리되는 경우 의선관위는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후보등록기간 연장의 안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 단, 후보 등록기간 연장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성인지 교육

제31조(성인지 교육의 진행)

성인지 교육에 대한 모든 사항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및 학생총투표에 관한 세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에 일임한다.

제32조(성인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

- ① 의선관위는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각 선본의 선본원 중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의선관위는 제1항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본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③ 의선관위는 의선관위 회의에서 의선관위원과 의선관위 집행부 중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6장 시행세칙 협의모임

제33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지위)

시행세칙 협의모임(이하 “시세협”이라 한다)은 선거를 당해 사정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제34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구성)

시세협은 의선관위원과 각 선본의 후보자와 선본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역할)

- ① 의선관위는 시세협을 통하여 각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본 간 의견을 적극 중재하여야 한다.
- ② 이 세칙은 시세협을 통하여 합의되어야 하되, 그러하지 못한 경우 의선관위는 이 세칙에 따라 유권해석 한다.
- ③ 시세협에서 결정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제36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운영)

- ① 의선관위원장은 시세협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시세협을 소집한다. 다만, 정기소집일 외에도 긴급한 경우 시세협을 소집할 수 있다.

1. 입후보 등록일
2. 투표의 전날
3. 개표의 전날

- ② 선본에서 시세협의 소집을 희망할 경우 각 선본의 후보자 또는 선본장은 의선관위원장에게 소

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선본의 후보자나 선본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세협에 참석하지 못할 시 후보자나 선본장의 역할을 선본원 중 1인에게 위임하고 해당 선본원이 시세협에 참석할 수 있다.
- ④ 선본은 반드시 후보자 또는 선본장을 통하여서만 의선관위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⑤ 시세협에서의 합의는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한 경우 의선관위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유권해석 하여야 한다.
- ⑥ 의선관위는 시세협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의선관위원과 각 선본의 후보자와 선본장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선거운동

제37조(선거운동의 정의)

- ① 선거운동은 선거에 임하여 특정 선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본회 회원은 선본에 참여하여 선본원으로서 이 세칙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38조(선거운동의 구성)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선본 · 후보자의 개인유세
2. 선본 · 후보자의 강의실유세
3. 선본 ·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선전
4. 선본 · 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
5. 학내외 언론에의 보도

제39조(선거운동의 기간과 공간)

- ① 선거운동의 기간은 입후보 확정공고일 이후부터 투표전날까지로 한다.
- ② 토요일 15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06시까지는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 ③ 이외 선거운동의 시간에 대한 제한은 의선관위에서 심의 · 결정한다.
- ④ 선거운동은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 학내 안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시세협에서 선거운동의 공간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⑤ 선본이 선거운동의 기간 또는 공간을 어길 경우 의선관위는 사안의 의도성을 판단하고, 의도적 인경우 “주의” 또는 “경고”, 의도적이지 아니하며 과실에 따른 경우 “주의”를 조치할 수 있다.

제40조(추천인 서명)

- ①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 · 단체는 유권자로부터 추천인 서명을 받을 수 있다.

- ②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추천인 서명 시 해당 선거의 언급과 정책의 기본방향에 한정하여 말할 수 있다.
- ③ 추천인 서명판(이하 “연서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해 의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후보를 준비하는 사람의 사진·성명·약력 및 출마의 변
 - 2. 선본을 준비하는 단체의 명칭·으뜸구호·기치·표시 및 정책의 기본방향
 - 3. 의선관위에서 배포한 서명용지
- ④ 의선관위는 각 연서판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일련번호 뒷자는 5개를 넘을 수 없다.
- ⑤ 의선관위는 6개 이상의 연서판을 적발하였을 경우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⑥ 모든 연서판에는 의선관위 명의의 인증표식이 있어야 한다.
- ⑦ 이밖에 추천인 서명의 세부지침은 시세협에서 다룬다.

제41조(선거운동본부원)

- ① 선본원은 선본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 ② 선본원은 본회 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의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③ 휴학생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선본은 의선관위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재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선본원 등록기간은 첫 번째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제42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① 의선관위원 및 의선관위 집행부
- ② 학생회 공식지위에 있는 사람(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의과대학 학생회, 의예과 학생회 및 의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의 대표자와 집행부)
- ③ 학생총회·학생총투표·확대운영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에 소속한 사람
- ④ 의과대학학생총회·의과대학총투표 및 의운위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에 소속한 사람
- ⑤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수수 받은 사람

제43조(선거운동을 위한 사퇴)

- ①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위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 ② 의선관위는 후보 등록의 마감일 7일 전까지 사퇴서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의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의선관위는 사퇴서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사퇴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⑤ 사퇴한 사람은 절차를 준수하여 선본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⑥ 사퇴서 수리기간과 선본원 등록기간은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제44조(학생회 및 언론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특정 후보자나 선본에 대한 지지나 비방을 할 수 없다.
1. 학생회 공식기구(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와 과·반 학생회 및 의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
 2. 본회에 속한 언론단체
 3. 학생총회·학생총투표·확대운영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
 4. 의과대학학생총회·의과대학총투표 및 의운위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에 소속한 사람
- ② 선본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당 단체”라 한다)의 선거운동을 발견할 시 의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의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단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의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선거비용의 제한과 공개)

- ① 의선관위는 선거운동에 쓰이는 비용의 한도를 첫 번째 시세협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 ② 의선관위는 선본이 의선관위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선본에게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③ 각 선본은 선거비용의 결산을 증빙자료(영수증)를 첨부해 투표 전날 09시부터 투표 마감일 18시까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의선관위는 제3항을 위반한 선본에는 “주의” 조치를, 투표 첫날 9시까지 게재하지 아니한 선본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제46조(그 밖의 사항)

이외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은 의선관위와 시세협에서 합의한다.

제8장 유세 및 선전

제47조(유세)

유세는 개인유세·강의실유세로 이루어지며 입후보 확정공고일 06시부터 투표 전날 18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의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

제48조(유세 선전물)

- ① 유세의 선전물은 인쇄매체·중형선전물·입간판·피켓 및 선본옷에 한한다.
- ② 의선관위는 선본의 선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본의 선전물을 제거하거나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할 수 있고 이를 본회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선전물의 내용을 사진·그림 및 글 등으로 구성
 2. 의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 부착

3. 리플렛, 신문 등의 인쇄매체는 흑백으로 제작
 4. 의선관위에서 허가한 소품만을 개인유세에 사용
 5. 의선관위의 도장을 찍어 승인
- ③ 선본의 선전물 부착 순서는 입후보 등록 이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④ 기타사항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 ⑤ 모든 선전물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선관위의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2. 배치는 불가능하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어길 경우 의선관위는 유권해석에 따라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4. 모든 부착형 선전물은 각 선본에서 시세협에서 정하는 날 06시부터 부착하기 시작하여 시세협에서 정하는 날 19시까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49조 (언론을 통한 선거유세)

언론을 통한 선거유세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내 언론단체가 각 선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도를 허용하며 그 밖의 매체를 통한 보도여부는 의선관위에서 결정한다.
2. 학내 언론단체는 각 선본의 공약·정책을 논평할 수 있다. 단,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비방이나 공약·정책에 대한 비난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50조(허위사실 유포와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

- ① 선본이 선전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본은 의선관위가 지정한 일시까지 문제가 된 부분을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 또는 선본원이 강의실유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해당 선본은 다음 날 08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강의실유세를 진행하여 정정발언을 하여야 한다.
- ③ 의선관위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 사후 대응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제9장 투표

제51조(투표기간)

의운위는 선거기간 중 3일을 투표기간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2조(투표기간의 연장)

- ① 모든 투표를 종료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 투표기간을 하루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연장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를 돌아오는 월요일로 변경한다.

제53조(투표시간)

의선관위는 투표기간에 한하여 투표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투표시간의 연장)

투표 마지막일과 연장일에 한하여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투표·개표 관련 실무 위임)

의선관위는 중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중선관위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 시, 의선관위는 위임여부와 사유를 자체 없이 선본과 유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6조(투표소의 설치)

- ① 의선관위는 지정한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한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단, 중선관위로의 개표·투표 실무 위임 시는 예외로 한다.
- ② 의선관위는 투표소의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투표소의 입구와 출구는 투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1. 해당 투표소의 의선관위원
 2. 해당 투표소의 참관인
 3. 장애학생이 투표할 때의 동행한 도우미
- ④ 의선관위원과 참관인은 해당 투표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제57조(투표소의 선전물)

투표소에는 투표용지 사용법과 유의사항, 의선관위가 제작한 포스터만을 부착할 수 있다.

제58조(투표자의 확인)

- ① 투표소를 관리하는 의선관위원은 선거인명부를 통하여 투표자를 확인한다.
- ② 특정선본의 선본원 또는 선본원에 요청에 의하여 타인이 이중투표나 대리투표를 할 경우, 의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본 회의 회원에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하거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9조(투표절차)

- ① 투표자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되,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점자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한 용지 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 ② 의선관위는 투표의 상세한 절차를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의 제작은 중선관위와 함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의선관위는 사전에 유권자를 파악하여 필요시 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위해 적절한 투표용

지를 특수 제작해야 한다.

제61조(투표함의 봉인과 보관)

- ① 의선관위원은 투표시간 종료 후 참관인과 의선관위원의 서명 후 투표함을 봉인하여야 한다.
- ② 의선관위는 각 선본의 참관인과 동행하여 봉인한 단대투표소의 중앙투표함은 중선관위 사무실로, 의대투표함은 의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다만, 개표일에 한하여 각 선거의 개표장으로 옮긴다.
- ③ 의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용지를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 ④ 의선관위는 투표함을 의선관위 사무실에 옮긴 후부터 투표소로 옮기기 전까지 의선관위원의 관리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2조(후보자의 투표소 접근 제한)

후보자는 투표를 제외한 때에는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다.

제10장 참관인

제63조(참관인의 자격)

각 선본은 투표소 당 1인의 선본원을 참관인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64조(참관인의 역할)

- ① 참관인은 투표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참관하여야 한다.
- ② 참관인은 각 선본 간 협의에 따라 투표독려행위를 할 수 있다.

제65조(참관인의 제한)

- ①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난하거나 선거 선전물을 소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부정행위로 보일만한 행위
 4. 그 밖에 의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한 행위
- ② 의선관위원은 투표소에서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참관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참관인”이라 한다)을 즉시 제지하고 해당 참관인의 행위를 의선관위에 보고한다.
- ③ 의선관위는 제2항의 사항을 논의하여 해당 참관인에게 퇴장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선관위로부터 퇴장을 조치 받은 참관인은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제66조(참관인의 이의제기)

- ① 참관인은 의선관위에 진행상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참관인이 투표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선관위원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한 시간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의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하고 투표를 재개한다.

- ③ 참관인이 해당 투표소에 불참한 선본은 의선관위원과 상대 선본의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장 개표

제67조(개표의 담당)

- ① 개표는 의선관위원과 각 선본에서 개표 담당자로 차출한 선본원이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② 선본은 한 투표구의 개표가 종료될 때마다 개표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68조(개표시작과 순서)

- ① 투표가 종료되면 의선관위의 감독과 각 대표자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를 검색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
1. 투표인명부 작성의 종료
 2. 투표자수가 유권자수의 과반에 달함
 3. 모든 투표함의 도착
 4. 의선관위원 및 각 선본의 담당자의 입회
 5. 투표함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 ③ 중앙투표함에서 의과대투표용지가 나올 경우 중선관위와 의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의대선거의 개표결과에 포함한다.

제69조(무효투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해당 투표구의 의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두 군데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
5. 해당 투표구의 의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로 기표한 것
6. 해당 투표구의 의선관위 도장이 없는 것

제70조(유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해당 투표구의 의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2. 한 후보의 란에 두 개 이상 기표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기표한 것이 옮겨 묻거나 인주가 묻어 훼손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지 명확한 것
4. 기표란 이외에 기표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71조(개표일과 개표장소)

- ① 개표일은 의운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날 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시세협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개표 장소는 의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72조(오차와 오차율)

- ① 오차는 “각 투표함별로 확인된 명부상의 투표자수와 각 투표함별로 확인된 실제 투표자수의 차(절대값)의 합과 이중투표와 대리투표로 확인된 수의 총합”이다.
- ② 오차율은 “오차/전체 선거권자 수×100(%)”이다.

제73조(결선투표)

- ① 개표의 결과 득표수가 1, 2위인 선본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해당 두 선본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② 결선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결선투표는 의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 투표율에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한 선본이 당선한다. 다만, 개표의 결과 해당 두 선본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결선투표를 반복한다.

제74조(재투표)

- ① 단일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재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재투표는 의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 선본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찬성표가 투표수의 과반일 경우 당선한다. 다만,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반복한다.

제12장 당선공고와 이의제기

제75조(당선공고)

의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이의제기)

- ① 의운위는 개표 이후 당선 선본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다.
- ② 본회 회원은 의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의선관위는 제기된 이의를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제13장 선거 부정

제77조(선거 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 부정이라 한다.

1. 누군가 투표 방해, 이중 투표와 대리 투표, 그 밖의 투표의 과정에 개입하여 조작한 경우
2. 누군가 개표의 결과를 조작한 경우
3. 후보자가 의선관위, 선본원 또는 유권자에게, 선본원이 의선관위 또는 유권자에게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4. 그 밖의 위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제78조(선거 부정의 판단)

- ① 의선관위와 의운위는 이의제기 기간 중 선거 부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② 의선관위가 누군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의운위에 “선거 부정 판단의 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의운위는 제2항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여야 한다.
- ④ 의선관위와 의운위는 선거 부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심되는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⑤ 의선관위와 의운위는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하며 모든 경과를 본회의 회원과 각 선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의선관위와 의운위는 선거 부정의 안건을 논의할 때에 해당 선본의 후보자를 배석하여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제14장 당선무효

제79조(당선무효)

의운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의를 거쳐 선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제78조에 따라 선본의 당선 이후 선거 부정이 발견된 경우
2. 제84조에 따라 선본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3. 당선 선본이 당선을 포기한 경우

제80조(당선무효의 공고)

의운위는 당선무효의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를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장 재선거

제81조(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오차율이 5% 이상인 때
 2. 연장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아니한 때
 3. 선거 부정이 발견된 때
 4. 당선 선본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5. 등록된 선본이 없거나 모든 등록선본이 무효처리되어 의선관위가 해산될 때
- ② 재선거가 결정될 시 의운위는 7일 이내로 재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제16장 선거의 종료

제82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① 의선관위는 선거의 제반업무를 마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1. 선본의 당선을 확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2. 당선한 선본이 없음을 공고하는 경우 단, 당선한 선본이 없음을 공고한 이후에도 의선관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운위의 의결에 따라 의선관위를 임시로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운위에서 정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의선관위는 해산하며 이를 즉시 공고한다.
- ② 의선관위의 해산으로 선거는 종료된다.

제17장 징계

제83조(징계의 종류)

- ① 의선관위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1. 구두주의
 2. 주의
 3. 경고
- ② 3개의 구두주의는 1개의 주의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 ③ 3개의 주의는 1개의 경고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84조(선거운동본부 · 후보자의 자격박탈)

의운위는 선본 ·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선본 ·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선본이 3회의 “경고”를 조치 받은 경우

2. 선본이 의선관위의 조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제85조(제재조치)

- ① 의선관위는 선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1. 이 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의선관위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 ② 선본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다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저지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의선관위가 최초로 접수한 A사안에 대해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사안은 A사안과 하나의 사안으로 취급 (다만,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재를 조치한 이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A사안과 별개의 사안으로 한다.)
 2. 의선관위가 최초로 접수한 A사안에 대해 접수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사안은 무효로 처리 (다만, 접수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한 사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한다.)
- ③ 의선관위는 의도성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본에게 “주의” 와 “경고”를 구분하여 제재를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의선관위는 선본이 “주의”를 조치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⑤ 의선관위는 “경고”를 조치 받은 선본의 포스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을 부착한다.
1. 경고장에는 “경고”의 사유와 조치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경고장은 A4용지 크기(297*210mm)로 한다.
 3. 첫 번째 경고장은 바탕색에 노란색을, 두 번째 경고장은 빨간색을, 세 번째 경고장은 검은색을 사용한다.
 4. 다음 날 08시부터 48시간 동안 부착한다. 다만, 토요일 15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06시까지는 선거를 중단하므로 부착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의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경고장을 철거한다.

제18장 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제86조(회계기간)

선거의 회계기간은 의선관위의 구성일로부터 선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7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

의과대학 학생회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8조(의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산)

의선관위는 의운위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결산을 본회의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